

입소이용의뢰서 관련 청구 시 확인사항

□ 청구 공통 확인사항

○ 입소이용의뢰서 발급기관 및 보장기관 일치여부 확인

: 발급기관과 보장기관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. 발급기관과 보장기관 다를 경우 청구 불가
※ 단, 시·군·구 간 MOU협약 등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. 이런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.

○ 접수일 및 승인일 확인

: 『2017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(Ⅰ)』 2-3 재가노인복지시설 5. 이용절차 가. 기초수급자,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2) 시군구에서는 “입소이용을 신청한 날부터 급여비용 인정” 단, 9)항에서 “급여 이용 이후에 입소, 이용신청을 한 경우 사례별로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급” 할 수 있음을 명시함.

○ 등급변경신청 등으로 인정유효기간(복지용구 적용기간)이 새롭게 생성되는 경우

: 인정관리 SEQ가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 승인 받은 이용기간이 인정유효기간을 벗어나게 됨.
따라서 입소이용의뢰서를 추가로 승인 받아야 함.

□ 복지용구 청구 시 확인사항

○ 승인받은 복지용구 품목과 실제 이용 품목 일치여부 확인

: **제품코드**, **수량**(미끄럼방지용품, 자세변환용구, 안전손잡이, 간이변기는 고시에서 정한 최대 사용개수 초과 불가),
금액(단가가 인상되는 경우)

○ 대여제품의 경우, 대여기간 확인

: **대여시작일**과 **대여종료일** 확인 필수.

※ 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지자체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함.

□ 재가급여 청구 시 확인사항

○ 급여비용 단가 변경

: **서비스 수가가 인상**될 경우, 지자체로부터 승인금액 추가발급이 필요할 수 있음. 사전 확인 필수

□ 시설급여 청구 시 확인사항
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동일일자에 지자체를 달리하여 전출입(시설 입·퇴소) 발생할 경우

예) 5/25일 강남구 소재 A요양원에서 14시 퇴소, 5/25일 강북구 소재 B요양원으로 16시 입소한 경우

- 강남구 소재 A요양원에서 퇴소 수가를 청구하려면, 강북구의 입소이용 승인을 받아야하며, 승인 여부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함.
-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소이용 승인은 일자별로만 가능하므로 기관 간 입·퇴소 시간을 반영하여 하루에 두 개 지자체의 입소이용 승인은 불가함.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동일일자에 지자체를 달리한 요양시설에 입·퇴소할 경우 해당일자의 입소이용 승인은 최종 전입한 지자체에서 해주어야 함.